## 한밭敎育博物館設置.運營條例案

의안 번호 104

제출년월일 : 1992. 3 . 2) 제출자 : 대전직할시교목감

### 1. 提案事由

地方教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41條의 規定에 의거 한밭教育博物館을 設置하여 教育의 理 念,目的,內容,方法 및 教育與件 等의 變遷過程을 理解하고 밝은 教育의 未來를 設計하 는데 活用하고자 함.

### 2. 主要骨子

- 가. 한밭敎育博物館의 위치를 정함. (案 第2條)
- 나. 한밭敎育博物館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정함. (案 第3條)
- 다. 한밭敎育博物館의 組織 및 定員에 關한 事項을 정함. (案 第4條 案 第5條)
- 라. 한밭敎育博物館의 管理, 運營에 關한 사항을 정함. (案 第6條 案 第8條)
- 마. 한밭敎育博物館所屬鑑定委員會 設置에 關한 事項을 정함. (案 第9條)

#### 3. 參考事項

가. 關聯法令

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 41 條

나. 其他

該當事項 없음

##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

- 제1조 (목적)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-조사-보존-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이념-목적-내용-방법 및 교육여건 등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보다 밝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활용하고자 한 밭교육박물관(이하 "박물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- 제2조 (위치) 박물관은 대전직할시 동구 삼성1동 113-1번지(대전삼성국민학교 구내)에 둔다
- 제3조 (업무)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-보존-관리 및 전시
  - 2.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전시와 관련된 인구 및 대내외 교육
  - 3. 타 박물관과의 박물관 자료-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협력업무
  - 4. 박물관 시설의 관리
  - 5. 기타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업무
- 제4조 (조직) ①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.
  - ② 관장은 관내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 - ③ 관장의 통할하에 서무과, 운영과를 설치한다.
  - ④ 사무분장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- 제5조 (정원) 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- 제6조 (입관의 제한) 관장은 박물관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관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- 제7조 (시설 및 전시물 훼손에 따른 책임) 관람자가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8조 (전시물 기증) ① 공중의 관람을 목적으로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한밭교육박물관소속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할 수 있다.
  - ② 기증된 전시물은 기증전시물 대장에 등재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9조 (한밭교육박물관소속감정위원회) ① 박물관에 전시할 전시물의 감정등을 위하여 관장 소속하에 한밭교육박물관소속감정위원회(이하 "감정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
- ② 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훈령으로 정한다.
- ③ 감정위원회에 출석한 교육감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